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4. 15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바뀐 법령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 순화를 통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변경된 「지방세기본법」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(안 제47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 제3항 (' 10.12.27.개정, 법률 제10415호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1조 (' 10.12.27.개정, 법률 제10415호)

□ 관련 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□ 예산 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03. 18. ~ 2011. 04. 07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- 개정방침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교육을 실시하여야” 를 “교육을 하여야”로 하고, 제14조 중 “아니할 것을 요구한” 을 “아니하라고 요구한”으로 하며, 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경과하였거나” 를 “지났거나”로 하고, 제20조제3항 중 “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” 을 “후에도 반송된 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제25조제2항 중 “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” 를 “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”로 하고, 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설정의 유무와” 를 “설정의 여부와”로, “설정년월일” 을 “설정연월일”로 하며, 제30조 중 “집행함에 있어서” 를 “집행하면서”로 하고, 제31조 제1항 중 “또는 검사를 할” 을 “또는 검사할”로 하며, 제33조제1항 중 “철저를” 를 “철저함을”로 하고, 제35조제2호 중 “부족될” 을 “부족하게 될”로 하며, 제38조제6호 중 “해당되지” 를 “해당하지”로, “수속을 하지” 를 “절차를 밟지”로 하고, 제41조제1항 중 “있은” 을 “있는”으로 하며, 제42조제1항 제3호 중 “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” 을 “제2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49조 제3항 중 “출석하여 발언을 할” 을 “출석하여 발언할”로 한다.

제47조 제3호 중 “법 제140조 제2항” 을 “법 제140조 제3항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박 용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배 순 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신운호 (행정 2198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~③ (생략)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「안산시 통·반 설치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·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·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<u>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⑤ (생략)</p> <p>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<u>아니할 것을 요구한</u>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) ①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 <u>경과하였거나</u>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</p> <p>제20조(시세환급금의 통지 등) ①~② (생략) ③ 재통지를 한 <u>후에도</u>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 ①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<u>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교육을 하여야</u>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 <u>아니하라고</u> <u>요구한</u></p> <p>제15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) ① 1. <u>지났거나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시세환급금의 통지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후에도</u> 반송된 경우에는</p> <p>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의하여 인계인수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등기·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)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면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.</p> <p>1. 전세권·질권·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·설정년월일·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·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6조(등기·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설정의 여부와</p> <p>.....</p> <p>설정연월일</p> <p>....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질문·검사권)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<u>집행함에 있어서</u>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·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~6.(생략)</p>	<p>제30조(질문·검사권)</p> <p>..... 집행하면서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6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참여자의 설정)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, 그 가족·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1조(참여자의 설정) ①</p> <p>..... 또는 검사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계속수입의 압류) ① 시장은 급료·임금·봉급·세비·퇴직금·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3조(계속수입의 압류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철저함을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(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)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,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5조(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부족하게 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(배분방법) 압류재산의 매각금액,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국·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(생략)</p> <p>6.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<u>해당되지</u> 아니하는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<u>수속을 하지</u>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7.~8.(생략)</p> <p>제41조(조세채권의 신고)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<u>있은</u> 때에는 자체 없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48조, 제149조,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제42조(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) ①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제1호 및 <u>제2호의</u>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제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8조(배분방법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해당하지</u></p> <p>..... <u>절차를</u> <u>밟지</u></p> <p>.....</p> <p>7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1조(조세채권의 신고) ①.....</p> <p>..... <u>있는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2호에</u> <u>따</u> <u>른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법 제140조제3항</p> <p>.....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②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,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, 간사는 위원회에 <u>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제49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출석하여 발언할...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